



# BBCHP 선박 수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하) 도입관세 없다고 수입신고 안으면 제재받아

지난 1998년 이전 까지만해도 해운선사들은 BBCHP 선박확보절차(선주협회 실수요자 추천 → 해양부 선정 → 한국은행 신고)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입신고 절차를 숙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외환자유화로 실수요자 선정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회사 실무자나 새로 소임을 맡은 담당자들이 제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최근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BBCHP 선박의 수입신고의 필요성과 제반절차 등을 '브릿지 합동 관세사무소 김덕용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내용을 (상)(하)로 나누어 실는다.(편집자 주)

## 5. 단순나용선 및 임차선박의 국내입항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대상인지?

단순나용선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내입항시에만 운수기관으로 운수기관의 입항신고 및 출항허가(관세법 제135조 및 제136조)를 받아야 한다.

기간용선의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경우 당해선박이 관세법상 외국무역선에 해당되는 외국과의 무역에 관련된 용도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운수기관」으로 처리하여 외국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법상 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재무부 관세제도 1242~371, 79. 6. 8)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단순나용선의 국내입항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

“내국인이 외국 국적의 선박을 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단지 개항된 우리나라 항구와 공해 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97도795, 1997. 9. 9)

## 6. BBCHP선박의 수입신고 시기

일반물품의 수입시기는 국내반입일 또는 장치일

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한다.

선박의 수입신고는 선박운용방법의 특성상 일반물품 신고시기와 달리 다음과 같이 수입신고 시기를 관례로 하고 있다.

- 가. 국내로 수입하여 내항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기 전 항구에 정박하였을 때나,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외국적 선박
  - 선박 등기하여 해양수산부에 등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조선소)에서 반출할 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해외 매각물품의 경우는 수출신고(반송신고에 준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신고 한다.
- 다. 외국 항행중 인수 받은 선박, 중고선 선박을 매매하고 최초 입항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 7.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 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관세법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280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제2항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4. 10. 5>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밀수출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만약의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과 벌금이 다음과 같이 중과 될 수 있다.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2항 :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항 :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 벌금을 병과한다.



밀수출입죄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통하여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해야 하는 물품을 신고 없이 또는 신고한 물품과 다른물품을 반출, 반입하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한다.

「범의」의미는 현행 형법 제13조[범의]라 함은 “죄의 성립요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범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인식의 고의를 지칭 한다.

또한 휴대품, 이사회물, 선용품, 우편물 등 인지 여부와 관련 없으며 관세가 있는 것이나, 무세품이거나 관련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수입죄(밀수입죄)가 적용된다.

BBCHP의 형식적인 소유권이 외국적인데 BBCHP선박이 국내입항신고 하고 출항허가를 받았지만 국내최초 입항시에 담당자의 단순오류 및 착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밀수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담당자의 실수로 수입신고 시기를 모르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밀수입죄만 성립하느냐? 하지만 과태



료 적용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상 선박을 무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형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신고방법의 오류 또는 신고누락으로 신고의 효력이 수입물품에 미치지 못하여 수입신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밀수입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관세법 기본통칙269-0...1(소유권 미취득 외국적 선박의 반입시 밀수입죄 등 해당여부)

- 내국인이 외국국적의 선박을 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단지, 개항된 우리나라 항구와 공해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

-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선박이 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신고 수입으로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도 8014, 2004. 3. 26)

8. 밀수입죄와 외국환거래법 등의 관계

선박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의거「임대차 계약」(소유권 이전 포함)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천만불 이상일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의거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또한, 동 법 제31조에 의거 해당법인과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벌금형을 과한다.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입(수출입죄)과 외국환거래법상의 무허가 신고 수출입죄의 입법목적, 그 대상물품과 구성요건, 그 수출입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비교·종합하여 보면, 귀 금속 등의 수출입 및 통관에 관한한 외국환거래법은 관세법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금속 등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 신고 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뿐, 관세법이나 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5도 6484, 2005. 12. 23)

기타 금속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 절차), 제181조는 적용될 수 없는 법이므로,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354판결)

9. 수입 미신고한 BBCHP선박도 몰수·추징이 되는지?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고 있는데 몰수·추징 대상인지? 의문이 있으나 밀수입죄 적용에 해당되면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밀수입죄는 형사소송법 준용(관세법 제319조)을 하게 되며, 관세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자와 법인도 처벌(관세법 제280조)하는 양벌적용을 받게되며, 밀수입죄에 해당되는 경우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한다.

### (1) 몰수에 대한 의미

“몰수”의 의미는 형법 제41조 제9호에 규정된 형의 종류로서 “징역이나 금고 따위의 형벌에 부가하는 재산형의 하나로서,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고,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무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관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 몰수가 아니라 필요적 몰수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몰수하여야 하며, 몰수하여야 하는 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행정이 되고, 몰수한 물품은 관세법에 적법하여 수입된 것으로 의제되며 몰수는 판결선고 전에도 할 수 있고, 판결선고 후에도 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후에 몰수하는 경우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몰수를 집행하는 것으로 종료하고,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하면 검사가 몰수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제출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몰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 (2) 추징에 대한 해석

“추징”은 형법상으로는 “몰수 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하고, 형법상으로는 “조세를 비롯한 기타 공과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하므로 관세법 제282조의 추징은 형법상의 추징을 의미한다.

추징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가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여, 공범이외에 범칙물을 점유하며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가액 전부를 추징한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규정된 “몰수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 훼손, 분실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그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 사유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는 때도 이에 해당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의 상당한 금액으로 추징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시가액 산출표에 근거하여 추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관세법 기본통칙 282-0...2 시가역산법에 근거한 추징금액 산정 방법)

## 10. 몰수품 처분과 관세법의 조사

관세법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세관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공매 기타의 방법에 처분할 수 있다.

관세법 제290조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관세법이 있다고 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며, 법 제291조(신문)에 따라 신문과 제292조(조서작성)에 의거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11. 선박의 수입신고 절차

선박의 수입통관 절차는 일반 수입화물 통관절차와는 많이 다르다. 입출항 스케줄내에 수입통관이 끝나야 한다는 점, 통상 화물선등에는 관세가 무세인 점, 선박에 공급적재되어 있는 잔량유류에 대한 SURVEY 실시 및 과세 등 그 절차도 일반화물통관 절차와는 많이 다르다.

(1) 필수구비서류

선박수입통관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B/L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계약서(가격과 조건 및 선박명세가 표현되어 있어야 함)
- INVENTORY LIST  
통신장비 리스트, 기타 선박설비등에 대한 명세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최근 직전 주유 INVOICE(주유 INVOICE가 없는 경우는 동종 유류에 대한 주유시 단가표가 있어야 함)
- 타소장치 허가서(관세법상 타소장치를 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및 해상운송사업 등록증(해양수산부)
- SURVEYOR'S REPORT
- 자격변경시 필요서류
  - 자격변경신청서(선장이 작성)
  - 승무원명부(선장이 작성)
  - 승무원 휴대품 목록(선장이 작성)
  - 선용품목록(선장이 작성)
  - 잔존유류확인서(선장이 작성)

- 검사보고서(세관검사 담당자가 작성)
- 기타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외항선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등 해양수산부 발행서류)
  - SURVEYOR'S REPORT : 잔량유류 확인
    - 이 서류로 인해 검사 생략할 수도 있음.

(2) 수입통관 절차

① 입출항 스케줄 확인

선박은 국내항에 정박해 있는 동안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또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 등 업무가 하역 완료시점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가능 시간을 정확히 하기 위해 입출항 스케줄 및 하역완료시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타소장치 허가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곳은 보세구역이고 외국무역선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는 항구는 개항에 한한다. 따라서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항구에 선박이 입항하거나 개항이더라도 항구에 접안하지 않고 외항에 정박해 있는 상태로 통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타소장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타소장치 허가신청은 관할세관에 할 수 있다.

타소장치라는 말은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외의 곳에 장치를 한다는 의미이다.

③ SURVEY 실시

관세법상 화물선은 관세가 무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선박에 주유적재되어 있는 연료유 등 유류에 대하여는 그 잔량에 대하여 관세, 특수세, 교통세 등이 과세되기 때문에 전문 유류 검정인(SURVEYOR)에게 잔량 유류를 검정을 의뢰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





필수구비서류가 구비되고 잔량유류 검정이 완료되면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항구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 선박수입통관 시에는 유류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과 세율을 다음과 같다.

- a. FUEL OIL(FO) : BUNKER C 등
  - 관 세 : 기본세율5%
  - 부가세 : 10%
  - 특소세 : 17%
  - 교육세 : 특소세액의 15%
- b. DIESEL OIL(DO)
  - 관 세 : 기본세율5%
  - 부가세 : 10%
  - 교통.에너지.환경세 : 358원/ℓ
  - 교육세 : 교통세액의 15%
- c. LUBRICATING OIL(LO) : 용도 및 제조사에 따라 그 종류가 다름
  - 관 세 : 기본세율 7%
  - 부가세 : 10%

#### ⑤ 하역완료

수입신고 및 신고수리가 완료된 후 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 및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 ⑥ 자격전환 승인신청

선박을 수입통관 한 뒤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자격을 관세법상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전환 승인신청은 관할세관에 신청을 하고 신청시 잔량 유류에 대하여 세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이때 검사된 수량만큼 추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 ⑦ 관세 등 환급 신청

상기의 절차를 완료한 뒤 선박이 외국무역선이 되어 출항 한 뒤에는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액은 최초 수입신고시 잔량유류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의 범위 내에서 출항전 잔량유류만큼에 상당하는 세액이다. 환급신청은 관할 세관에 할 수 있다.